일반상품개발파트/이태희/1F4A8A3F

사업방법서 별지

(수상레저보험)

1. 보험의 종류
   특종(종합)/기업성 · 가계성

2. 보험목적에 관한 사항
   가. 동산 및 부동산(순수하게 원형대로 존재하는 토지 제외)
   나. 피보험자의 신체
   다. 법률상 배상책임

3.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영수할 수 있다.

5.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나. 계약자특성에 따른 보험료의 할인 · 할증은 "수상레저보험 개별 할인할증 기준"에 따른다.

6. 기타 필요한 사항
   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기본계약의 담보를 제외하여 특약의 내용만으로 상품을 구성하여 적용할 수 없다.
   다. 사망을 보장하는 담보 운용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라. "업무외사망보험수익자지정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특약부가 대상 : 단체보험 계약(단체취급 특별약관을 부가한 계약 포함)

일반상품개발파트/이태희/1F4A8A3F

중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이외의 자(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 또는 변경되는 계약

- 사망보험금의 청구 : 이 특약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청 구할 때,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확인서(<별첨1> 및 <별첨2> 참조)를 제출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 기 타 : 이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업무외 사망"으로 인한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인 사실 및 기업 단체보험의 근로자 사망보험금 관련 판례의 주요내용(<별첨3> 참조)을 보험가입시 안내한다.

삼성화재

일반상품개발파트/이태희/1F4A8A3F

일반상품개발파트/이태희/1F4A8A3F

< 별첨 1 >

업무상 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확인서

[회사제출용]

법정상속인 (　　)은 아래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보험계약 내용 및 업무상 사망 원인]

상품명 및 계약일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업무상 사망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	업무외 사망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업무상 사망 원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참조 ※ 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업무수행 중의 사고(제27조)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제28조) 행사 중의 사고(제30조)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제31조) 요양 중의 사고(제32조)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제33조) 업무상 질병(제34조) 출퇴근 중의 사고(제35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제36조)		□ □ □ □ □ □ □ □ □
지급보험금(예상)	원		

※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상 상해와 업무상(외) 사망은 상이합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 및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는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고(故) _____님의 사망보험금이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상 사망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됨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고 확인 서명을 기재하여 첨부서류를 같이 제출하오니 해당보험금을 업무상 사망 보험수익자인 _____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상속인]

성명 :　　(서 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서 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서 명)　　주민등록번호 :

※ 첨부 :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

피보험자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구)제적등본

일반상품개발파트/이태희/1F4A8A3F

일반상품개발파트/이태희/1F4A8A3F

< 별첨 2 >

업무외 사망보험금 법정상속인 확인서

[회사제출용]

법정상속인 (　　)은 아래 보험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보험계약 내용 및 업무외 사망 원인]

상품명 및 계약일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업무상 사망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	업무외 사망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
업무외 사망 원인 ※ 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사고원인을 기재 바랍니다)		
지급보험금(예상)	원		

※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상 상해와 업무상(외) 사망은 상이합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 및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는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고(故) _____님의 사망보험금이 계약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외 사망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됨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고 확인 서명을 기재하여 첨부서류를 같이 제출합니다.

[법정상속인]

성명 :　　(서 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서 명)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서 명)　　주민등록번호 :

※ 첨부 :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

피보험자기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구)제적등본

일반상품개발파트/이태희/1F4A8A3F

일반상품개발파트/이태희/1F4A8A3F

< 별첨 3 >

업무외사망보험수익자지정 특별약관 주요내용 확인서

[회사제출용]

[사망보험금 관련 보험수익자 결정 및 사망보험금 청구 시 필요 서류]

◆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업무와 무관한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험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판례의 취지에 따라, '업무외 사망'으로 인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보험계약자 자필기재)** 으로 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70285

◆ 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법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지급확인원(보험사제출용) 등 업무상의 재해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사망'으로 보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가입은 되어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상 사망' 또는 '업무외 사망'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망' 및 '업무외 사망'의 구분에 대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업무상 사망'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이 특약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고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확인서

◆「"업무외 사망"으로 인한 보험수익자」가 업무외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해당 보험금 청구 사실을 알리고 계약자를 통하여 "업무외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상 상해와 업무상(외) 사망은 상이합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 및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는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단체명 : _____(거래인감)　　사업자등록번호 : _____

일반상품개발파트/이태희/1F4A8A3F

일반상품개발파트/이태희/1F4A8A3F